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

사건번호　　타경　　부동산강제(임의)경매
채 권 자
채 무 자(소유자)
매 수 인

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　　는(은)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　　년　　월　　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

1. 부동산목록　　4 통
1.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　　1 통
1. 토지대장등본　　1 통
1. 건축물대장등본　　1 통
1. 주민등록등본　　1 통
1. 취득세 영수증(이전)
1. 등록면허세 영수증(말소)
1. 대법원수입증지-이전 15,000 원, 말소 1 건당 3,000 원(토지, 건물 각각임)
1. 말소할 사항(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) 4 부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(매수인)　　(인)
연락처(☎)

지방법원　　귀중

☞유의사항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 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
2.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 만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함